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156

발의연월일: 2020. 7. 17.

발 의 자:진성준·조응천·진선미

김교흥 • 문진석 • 조오섭

정정순 · 홍기원 · 문정복

강준현ㆍ허 영ㆍ김회재

장경태 · 박상혁 · 김윤덕

유후덕 · 천준호 의원

(1791)

제안이유

임대등록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대등록한 주택에 한해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하여 주택임대차관련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등록임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됨.

이에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유형은 폐지하고, 폐지되는 임대주 택유형으로 기 등록된 주택의 경우 최소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 되도록 하며 최소임대의무기간 내에서도 적법한 사업자가 원하 는 경우 등록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더불어 새로이 의무가 강화되는 일반 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향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강화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등록임대주택의 공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를 폐지함(안 제2조제5호·제6호, 제5조, 제42조, 제44조 등).
- 나.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연장(안 제2조제4호·제5호).
- 다.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여부 등을 고려함 (안 제49조 개정, 제5조제5항 신설).
- 라.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함(안 제6조제1항제10호 신설).
- 마.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이 자동말소되도록 함(안 제6조제 5항 신설).

법률 제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8년"을 "10년"으로, "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를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으로 한다.

10.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19호)」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구 「임대

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중민간매입임대주택(아파트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제4 3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내(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유지중인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19호)」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인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 부칙제5조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구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경과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

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으로 한다.

- 11.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19호)」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구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중민간매입임대주택(아파트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내(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유지중인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19호)」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인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 부칙제5조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구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 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제2호 중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 3.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제60조제1항 중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를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를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을 각각 제5항부터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할수 없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3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민간임대 등록유형 폐지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분으로서 이 법 시행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19호)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그 등록은 말소된 것으로, 등록신청은 무효로 본다.

- ② 2020년 7월 10일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19호)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부칙 제5조제5항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4호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된 주택은 2020년 7월 11일 이후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주택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신청 및 변경된 경우 이를 무효로 본다.
- 제3조(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 중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1년 후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4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u>8년</u> 이상 임대할	<u>10년</u>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	
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5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u>8년</u>	<u>10년</u> -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하여 임대하는 <u>민간임대주택</u>	민간임대주택(공
을 말한다.	동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
	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u>한다)</u> 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	<u>< 삭 제></u>
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 15. (생략)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생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현 략)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 ② (현행과 같음) 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 여야 한다.
- 1. ~ 2. (생 략)
-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 간임대주택
- ③ ~ ④ (생략) <신 설>

7. ~ 15. (현행과 같음) 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3. ---------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 ③ ~ ④ (현행과 동일)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 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 우 당해 신청인의 신용도, 신 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 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 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 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 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 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 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해당 주택 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⑥ (생략) <신 설>

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당해 등록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 |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⑥ (현행과 같음)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 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 우 당해 신청인의 신용도, 신 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 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 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 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 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 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 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해당 주택 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 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당해 등록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시 제6 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 -야 한다.

1. ~ 9. (생 략) <신 설>

∥6조(임대사업자의	능독)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법률 제17219호)」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법률 제15356호)」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른 단기임대 주택을 포함한다]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장기일 반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 56호)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구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 을 포함한다] 중 민간매입임 대주택(아파트로 한정한다)에 ② ~ ④ (생 략) <신 설>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제43조 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내(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에는 그 임차 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 정한다) 등록 말소를 신청하 는 경우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1 9호)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_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른 단기 임대주택,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중 임대의무 기간이 5년(같은 법 제2조의2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인 임대주택을 포함 한다]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 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법률 제15356호)」 부칙 제 5조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 택,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의2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

⑤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법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①(생략) 1. ~ 10. (생략)

<신 설>

주택을 포함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최
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
한다) 및 제5항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된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19호)」 제2조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19호)」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19호)」 제2조

제5조제5항에 따른 단기임대

② ~ ④ (생 략) <신 설>

주택을 포함한다]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장기일 반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 56호)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구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 을 포함한다] 중 민간매입임 대주택(아파트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제43조 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내(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에는 그 임차 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 정한다) 등록 말소를 신청하 는 경우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1 9호)」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4호 중 임대의무

⑤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 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 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 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 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 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기간이 5년(같은 법 제2조의2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인 임대주택을 포함
한다]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
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법률 제15356호)」 부칙 제
5조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
택,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의2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최
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날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
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날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 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날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 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날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 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날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 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날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 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날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 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날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 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생 략)

- 1. (생략)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 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 라 공급
- ② ~ ④ (생략)

제44조(임대료) ① (생 략)

- 1. (생략)
-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ㅣ 우: ----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 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 ② ~ ⑤ (생 략)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생략)

1. ~ 3. (생략) <신 설>

- ②·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시점부터

(향		과	. 2	上음)
\ 1	<u>'</u> 0	, ,		

- 1. (현행과 같음)
-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임대료) ①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①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 입임대주택
- ② · ③ (현행과 같음)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분할납부할 수 있다.

- 1. (생략)
- 2. <u>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u><u>간임대주택</u>: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신 설>

⑤ · ⑥ (생 략)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 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u>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u> 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 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
차계약이 있는 경우:
3.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
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
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
대차계약 개시일
⑤·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 -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
고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
하기 위하여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 ⑥ (생 략) 제67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 설></u>

④·⑤ (생략)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7. (생략) <신 설>

<u>4</u>	국토교 등	통부장관	<u> </u>	보체]계
에 -	구축된	정보를	· 외부	-기관	ŀ에
제공	할 수	없다.	다만,	0]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요청] 0]
있는	경우	그러하>	지 아니	 하디	 7.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 ④·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7. (현행과 같음)
-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 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u>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u>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